

투자 위험 등급 6등급(매우 낮은 위험)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u>실제 수익률 변동성</u> 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삼성스마트MMF법인 제1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스마트 MMF법인 제1호를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삼성스마트MMF법인 제1호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4. 작 성 기 준 일 : 2023. 4.28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3. 5.11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집(매출) 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별도의 모집(매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 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마. 특수형태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3. 모집 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 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변경 내역
 - 다.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나. 종류형 구조
 - 다. 모자형 구조
 - 라. 전환형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 대상
 - 나. 투자 제한
 -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나. 수익 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 가. 매입
 - 나. 환매
 - 다. 전환
12.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다.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 배분
 - 나. 과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 가. 요약 재무정보
 - 나. 재무상태표
 - 다. 손익계산서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가. 연평균 수익률
 - 나. 연평균 수익률 추이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제4부 |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라. 운용자산 규모
2. 운용관련 업무 위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위탁회사
 - 나. 기타 업무의 위탁회사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가. 신탁회사
 -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라. 채권평가회사

제5부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수익자총회
 - 나. 잔여재산분배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라. 손해배상책임
 - 마. 재판관할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증권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 해지
 - 나. 임의 해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 보고서

나. 수시 공시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의무투자

나. 투자목적의 투자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MMF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가능합니다.
9. 이 투자신탁은 법인 전용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 법인이 아닌 자는 투자하실 수 없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설명서 포함)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요약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3.04.28)

삼성스마트MMF법인 제1호(펀드 코드: 36616)

투자 위험 등급 6등급(매우 낮은 위험)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전부를 투자함에 따라, 단기 금융상품 투자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위험,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기준가격 변동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삼성스마트MMF법인 제1호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해·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전부를 투자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 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 ·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0.100%	0.040%	0.16%	0.108%	11	22	33	58	1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퇴직연금))	없음	0.080%	0.020%		0.086%	9	17	27	46	10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퇴직연금))	없음	0.070%	0.010%		0.076%	8	15	24	41	9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디폴트옵션, 퇴직연금(O(디폴트옵션))	없음	0.068%	0.008%		0.068%	7	14	21	37	84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되, 기타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이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비교할 대상 클래스가 없어 총비용 일치 시점을 구할 수 없습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2/04/29~ 23/04/28	21/04/29~ 23/04/28	20/04/29~ 23/04/28	18/04/29~ 23/04/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14-03-27	2.94	1.94	1.52	1.55	1.60
비교지수(%)	2003-04-08	2.81	1.83	1.39	1.43	2.56
수익률 변동성(%)	2003-04-08	0.12	0.16	0.15	0.11	0.15

- 비교지수 : 콜라리*100%(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중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단기금융)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시현	1980	책임(팀장)	13개	92,891억원	2.88%	3.70%	2.63%	3.4%	17년 0개월

-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자산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 사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 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 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어음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탁계약 및 신고서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및 어음등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의 전부를 단기금융상품(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채권, 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및 정기예금, 단 기대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므로 단기금융상품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 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 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장부가와 시가와 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 위험	장부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2영업일(D+1)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3영업일(D+2)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 순자산총액 "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계혜택제과 등 투자자의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1. 이연판매보수(CDSC) 적용기준 및 내용 - 해당사항없음				
	2. 전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전화:02-3774-7600, 콜센터:080-377-4777)				
모집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별도의 모집(매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매출 총액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집(매출) 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효력발생일	2023. 5.11		존속기간	해당사항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는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판매경로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직판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을 직접 판매하며 다른 판매회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일반적으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기타	랩	판매회사의 일일형 Wrap 계좌전용 등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되는 경우는 제외)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가 선택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설정·설립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www.samsungfund.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www.samsungfund.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클래스)	펀드코드
삼성스마트MMF법인 제1호	3661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AP6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CF82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퇴직연금))	AZ72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퇴직연금))	CF0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디폴트옵션, 퇴직연금(0(디폴트옵션))	DX224
수수료미징구-직판(직판f)	AR10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중도환매가능)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납입가능)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 해당없음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부의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 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추가 모집이 가능한 개방형(추가형) 투자신탁으로, 모집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모집기간을 별도로 정해두지 않습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별도의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amsung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특이사항 없음
매출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부의 "11.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클래스)	펀드코드
삼성스마트MMF법인 제1호	3661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AP6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CF82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퇴직연금))	AZ72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퇴직연금))	CF0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디폴트옵션, 퇴직연금(O(디폴트옵션))	DX224
수수료미징구-직판(직판f)	AR10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3. 4. 8	최초 설정
2005.11.21	판매 및 환매가격의 미래가격 적용
2006. 5. 2	신탁보수인하
2009. 5. 3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
2009. 7.22	시행령 등 개정으로 인한 운용제한 정정 등
2009.10. 6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인한 운용제한(채무증권 투자한도) 추가
2010. 4.23	신탁업자 변경(중소기업은행->한국증권금융)
2011. 5.12	투자신탁 명칭 변경(삼성신종MMF 제102호->삼성스마트MMF법인 제1호), 신탁보수 인하
2012.11.30	운용역 변경(이동근 운용역 → 조성섭 운용역)
2013. 5.24	자본시장법 시행령(제241조) 개정에 따른 투자대상 자산(전자단기사채등)추가
2013.11. 1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인한 운용제한(잔존만기축소등) 추가, 판매보수 인하
2014. 3.28	종류형투자신탁으로 변경, 직판 클래스 추가
2015. 2. 6	Cp클래스 추가
2015. 4.13	운용역 변경(조성섭 운용역 → 김시현 운용역)
2016. 4.29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른 운용제한 변경
2018. 9. 6	Cpe(퇴직연금)클래스 추가
2018. 9.28	Cw클래스 추가
2020. 5.27	Cp(퇴직), Cpe(퇴직) 클래스 판매보수 인하
2022. 4.26	클래스 명칭 변경(직판 → 직판f),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른 운용제한 변경
2022. 8.25	클래스 추가(Cpo(디폴트옵션))
2022. 8.26	클래스 명칭 변경 (Cpo(디폴트옵션)→ O(디폴트옵션)),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조건 명확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화
2023. 3.31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시가평가사항 반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또는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자산운용(16~18층) (대표전화 : 02-3774-7600, 콜센터 : 080-377-4777)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의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단기금융)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시현	1980	책임(팀장)	13개	92,891억원	2.88%	3.70%	2.63%	3.4%	17년 0개월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김시현	2006년 01월 ~ 2010년 08월 대한생명보험 채권운용 2010년 09월 ~ 2011년 02월 마이에셋자산운용(주) 2011년 03월 ~ 2012년 11월 삼성자산운용 SA운용팀 2012년 12월 ~ 2014년 08월 삼성자산운용 FI운용2팀 2014년 09월 ~ 現 삼성자산운용 Money Market 운용팀

-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 (주3)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4)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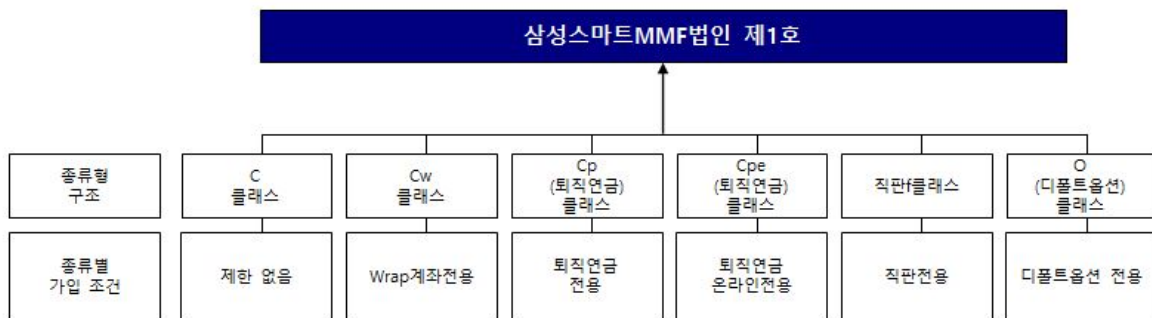
운용역	운용 기간
김시현	2015. 4.13 ~ 현재

주1) 2023. 5.11 기준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는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경로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직판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을 직접 판매하며 다른 판매회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일반적으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전용 등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되는 경우는 제외)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가 선택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설정·설립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 클래스의 수익자는 법인으로 제한된다.

클래스종류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03. 4. 8	가입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2023. 4. 24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퇴직연금))	2020. 5. 1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전용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퇴직연금))	2019. 2. 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매수 청약할 수 있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디폴트옵션, 퇴직연금(0(디폴트옵션))	미설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직판(직판f)	2022. 12. 2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

(3)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클래스종류	수수료			보수(연,%)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집합투자	판매	신탁	일반사무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	없음	0.05	0.04	0.01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	없음	0.05	0.001	0.01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퇴직연금))	-	-	없음	0.05	0.02	0.01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e(퇴직연금))	-	-	없음	0.05	0.01	0.01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디폴트 옵션, 퇴직연금(0(디폴트옵션))	-	-	없음	0.05	0.008	0.01	-
수수료미징구-직판(직판f)	-	-	없음	0.05	0.00	0.01	-

주)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라. 전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채권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은 제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
2)	어음등	-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 제외)
3)	채권 및 어음의 신용등급	-	가.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권 및 어음등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2개 등급”이라 함)이내이어야 하며,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 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함. 나. 위의 '가'에도 불구하고 채권 및 어음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에서 정한 신용평

	채권 및 어음의 신용등급		가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음. (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 등급 이내인 것 (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것 (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것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것 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 및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위의 '나'의 '(1)'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권 및 어음등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라.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 및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가'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위의 '나' 및 '다'의 규정에 따라 편입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함)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및 어음등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함.
4)	집합투자증권등	5% 이하	법 제2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5)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예의 예치 다.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투자신탁 보유 증권 총액의 5%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 총액의 5% 이내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가능
7)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된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주2)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재산을 채무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 및 영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채무증권 : 자산총액의 100분의5 (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로 하며, 만기 80일 이상 100일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이하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어음: 자산총액의100분의3 (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100분의1로 한다) 다. 발행 당시 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단기사채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이 경우 본조제2항가목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일거래상대방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 대출한 금액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 매수 - 만기 30일 이내일 것 -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 -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일 것 다.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한 금액	

대여 및 차입	이 투자신탁 보유하는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행위	
투자금지자산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다음의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가.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다. 주식관련 사채권 및 사모사채 라. 외화로 표시된 자산 마.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것 바. 위의 마.와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	
잔존만기 제한	가. 잔존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국채증권, 1년을 초과하는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법 제71조제4호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기업어음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나. 잔존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에 투자하는 행위 다. 잔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양도성 예금증서에 투자하는 행위	
가중평균만기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가 60일을 초과하는 행위	
국채증권에의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잔존기간이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채무증권 투자한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중 채무증권(법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및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투자하지 않는 행위	
후순위채권에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현금 등 유동성자산에 투자	①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 가. 현금 나. 국채증권 다. 통화안정증권 라.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양도성 예금증서·정기예금 -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법 제71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기업어음증권 - 영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 단기사채 마. 환매조건부매수 바. 단기대출	

	사.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②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 가. 제1항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자산 나.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제1항 라목 해당하는 것 다. 제1항 마목 부터 사목까지 해당하는 것	
안정적 자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하 “안정적 자산 비중”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 가. 현금 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다. 양도성 예금증서 라. 영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예의 예치 마.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단기사채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한다.) 바. 제1항제3호가목및 나목에 따른 단기대출 또는 환매조건부매수. 다만, 환매조건부 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이며 최소증거금률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 중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영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	2023년 3월 31일까지 안정적 자산을 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경우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 (1)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투자신탁재산을 단기금융상품 범위내에서 투자하되,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중 채무증권(법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및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40%이상을 투자합니다.

· 단기금융상품이란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 ②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법 제71조제4호에 따른 주권 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기업어음증권. 단,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않음
- ③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 제외)

④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⑤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에의 예치

⑥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⑦ 단기사채등

(2) 단기금융상품중 채권 및 어음등의 신용등급과 잔존만기를 엄격히 제한할 예정입니다.

(3) 이 투자신탁은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1) 비교 지수 : Call 금리 $\times$ 100%

2) 선정사유 : Call 금리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의 특성을 잘 반영하기 때문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 해당사항 없음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경우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의 전부를 단기금융상품(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채권, 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및 정기예금, 단기대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므로 단기금융상품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어음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탁계약 및 신고서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및 어음등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 위험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 위험	장부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 자산 30% 이하 시가평가 전환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의 안정적 자산이 자산총액의 30%이하인 경우 기준가격 계산시 시가평가로 전환됩니다. 안정적 자산이란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 분류기준에 의거한 현금, 국채, 지방채, 특수채, 통안채, 기타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말합니다.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 등에 불리한 영향을 받아 안정적 자산이 30%이하가 되는 경우 시가 계산에 의한 기준가격을 반영시킴에 따라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라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 “제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 위험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을 단기금융상품 범위내에서 투자하되, 투자대상자산 중 채무증권(법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및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40%이상을 투자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추후 매 결산 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다시 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6등급 중 6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낮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기간이 매우 짧고 환매수수료 부담 없이 수시로 입·출금하고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위험등급구분]

- 1등급 : 매우높은위험
- 2등급 : 높은위험
- 3등급 : 다소높은위험
- 4등급 : 보통위험
- 5등급 : 낮은위험
- 6등급 : 매우낮은위험



<위험등급 기준표(연환산 표준편차 기준)>

등급	1(고위험)	2	3	4	5	6(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주1)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등급 기준표상의 표준편차 상한치를 비교합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운용펀드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

주2)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0.14%** 입니다.

주3)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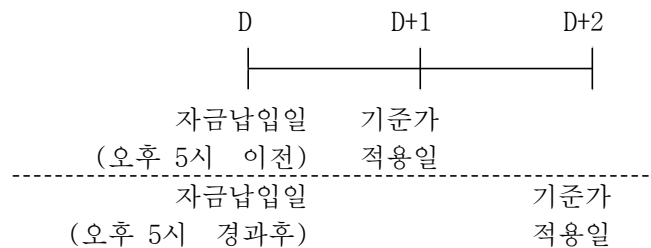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래스 명칭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전용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매수 청약할 수 있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디폴트옵션, 퇴직연금(0(디폴트옵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직판(직판f)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2)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3)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시 유의사항

- 1)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법인에게만 판매합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거나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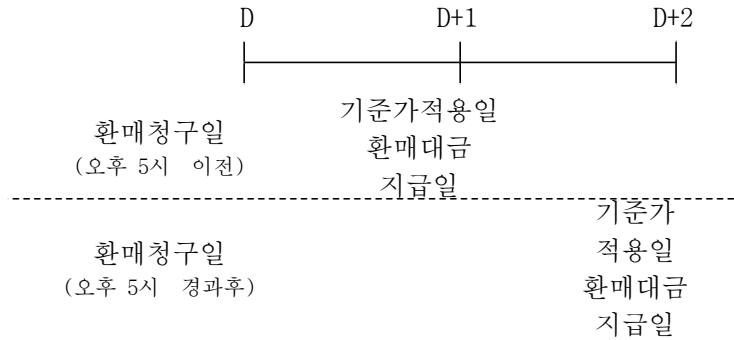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에서 이 투자신탁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영업일(D+1)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2)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D+2)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 3)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당일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법 시행령 제257조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2)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청받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4) 1) 내지 3)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환매연기에 따른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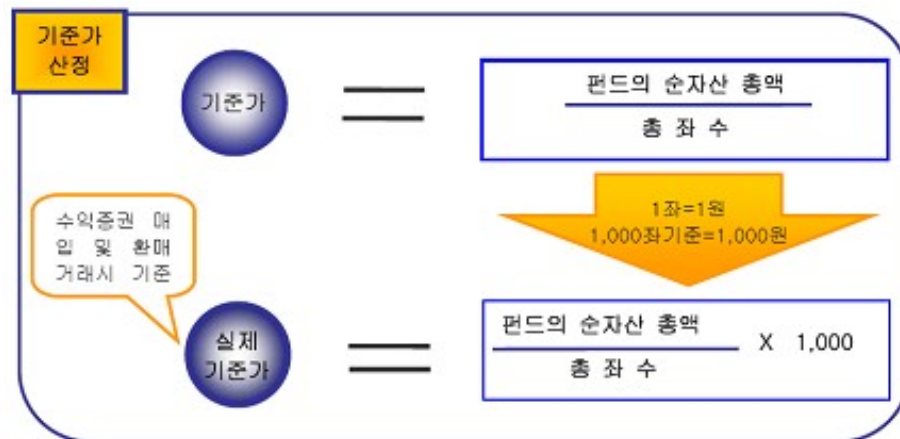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합니다.
종류간 기준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투자신탁(MMF)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그 종류별로 다음의 방식에 의한 장부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채무증권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평가)
채무증권 외의 자산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평가)

주)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2) 위의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경우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안정적 자산 비중이 3영업일 연속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가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260조제2항에 따른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부가격 평가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에 위기상황에서의 장부가격 평가 중단을 포함하여 전환매유인 관리조치를 기재한 경우

2. 직전 10영업일 이내에 일시적·일회성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

②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편입 증권 등을 시가에 의하여 조정평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시가평가 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1)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2)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보수 및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클래스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제한없음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Wrap 계좌전용 등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퇴직연금))	퇴직연금 전용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퇴직연금))	퇴직연금 온라인 용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디폴트 옵션, 퇴직연금(O(디폴트옵션))	디폴트옵션 전용	-	-	없음	-
수수료미징구-직판(직판f)	직판 전용	-	-	없음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주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2)종류별 가입자격 1) 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투자신탁 관련 보수등

클래스종류	지급비율(연간,%)									
	집합투자 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동종유형 총 보수	총 보수 · 비용(외 투자 집합 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0.05	0.04	0.01	0.00	0.10	0.0078	0.1078	0.16	0.1078	0.01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0.05	0.001	0.01	0.00	0.061	실비	0.061	-	0.061	실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퇴직연금))	0.05	0.02	0.01	0.00	0.08	0.0056	0.0856	-	0.0856	0.012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퇴 직연금))	0.05	0.01	0.01	0.00	0.07	0.0061	0.0761	-	0.0761	0.01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디폴트옵션, 퇴 직연금(O(디폴트옵션))	0.05	0.008	0.01	0.00	0.068	실비	0.068	-	0.068	실비
수수료미징구-직판(직판f)	0.05	0.00	0.01	0.00	0.06	0.0061	0.0661	-	0.0661	0.013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	------------------	--------	---	---	---	--------

- 주1) 총보수·비용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 주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정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보관대리인 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등
-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3)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 (국내자산)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 ELW/ELS 거래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등
 - (해외자산) 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
-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한 비율 추정치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및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발생 내역, 천원)
증권거래비용	0

- 주4)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발생 내역, 천원)
금융비용	-

※ 회계기간 중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직전 회계연도의 발생 비용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단위: 원)

클래스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776	21,841	33,460	58,469	132,79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776	21,841	33,460	58,469	132,790

클래스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6,100	12,364	18,941	33,099	75,17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100	12,364	18,941	33,099	75,17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564	17,358	26,591	46,467	105,53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564	17,358	26,591	46,467	105,53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609	15,423	23,628	41,289	93,77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609	15,423	23,628	41,289	93,77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디폴트 옵션, 퇴직연금(0(디폴트옵션))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6,800	13,783	21,115	36,897	83,79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800	13,783	21,115	36,897	83,796
수수료미징구-직판(직판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6,612	13,402	20,532	35,878	81,48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612	13,402	20,532	35,878	81,483

주)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되, 기타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이 투자신탁은 비교할 대상 클래스가 없어 총비용 일치 시점을 구할 수 없습니다.

(2) 투자신탁 관련 비용

-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 2) 증권 등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 제외)
-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비용
-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다음 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 제1항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수취하는 투자신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기준지표	보수 산정방식	한도 (%)	산출 주기	지급시기	지급내역 (직전 회계연도 기준,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	-	-	-	-	-	-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zero"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2) 수익자는 (1)에 의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을 금전 등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3)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 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4)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1)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2)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 3)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1)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3)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①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13.2%(또는 16.5%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 공제
단,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
-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시 적용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연금 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의 '연금세제안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 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아래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회계법인 : 대주회계법인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재무상태표			
항목	20기 (2023. 4. 7)	19기 (2022. 4. 7)	18기 (2021. 4. 7)
자산총계	5,966,138	2,921,577	5,686,153
운용자산	5,943,203	2,915,322	5,665,243
증권	1,918,122	943,116	2,064,542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4,025,081	1,972,206	3,600,700
기타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2,935	6,255	20,910
부채총계	799	342	336,883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799	342	336,883
자본총계	5,965,340	2,921,235	5,349,269
원본	5,807,006	2,897,510	5,313,053
수익조정금	37,545	-6,664	5,046
이익잉여금	120,789	30,389	31,170

(단위 : 백만원)

손익계산서			
항목	20기 (2022. 4. 8~2023. 4. 7)	19기 (2021. 4. 8~2022. 4. 7)	18기 (2020. 4. 8~2021. 4. 7)
운용수익	125,118	34,303	35,893
이자수익	124,912	34,207	35,347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45	67	517

항목	20기 (2022. 4. 8~2023. 4. 7)	19기 (2021. 4. 8~2022. 4. 7)	18기 (2020. 4. 8~2021. 4. 7)
기타수익	60	30	29
운용비용	4,329	3,914	4,722
관련회사 보수	3,738	3,481	4,267
매매수수료	452	291	270
기타비용	139	141	185
당기순이익	120,789	30,389	31,170
매매회전율	-	-	-

주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시로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 입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 백만원, 주)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 (B)	매매회전율 (A/B)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0	0	0	0		0.00	0.00

* 동종유형이란 상장지수집합기구 및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제외)을 의미하며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의 전체의 평균 매매회전율을 의미합니다.

* 해당 투자신탁이 자투자신탁인 경우에는 투자대상인 모투자신탁의 매매회전율에 대한 내용이며, 자투자신탁에서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비율을 안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2) 증권의 대여/차입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기 (2022. 4. 8~2023. 4. 7)	19기 (2021. 4. 8~2022. 4. 7)	18기 (2020. 4. 8~2021. 4. 7)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는 수수료 수익 등 포함	0	0	0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는 수수료 비용 등 포함	0	0	0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2022. 4. 8~2023. 4. 7)			전기 (2021. 4. 8~2022. 4. 7)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 (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 (B/A)
주식	0	0	0.00	0	0	0.00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등)	3,796,540	0	0.00	1,580,024	0	0.00
부동산	0	0	0.00	0	0	0.00
장내파생상품	0	0	0.00	0	0	0.00
장외파생상품	0	0	0.00	0	0	0.00
기타	190,342,937	0	0.00	104,455,152	0	0.00
합계	194,139,477	0	0.00	106,035,176	0	0.00

*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 장외파생상품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 생략 가능합니다.

* 해당 투자신탁이 자투자신탁인 경우에는 투자대상인 모투자신탁의 거래비용에 대한 내용이며, 자투자신탁에서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비율을 안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 억좌, 억원)

클래스종류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22.4.8 ~2023.4.7	25,152	25,152	270,494	270,494	240,849	240,849	54,797	54,797
	2021.4.8 ~2022.4.7	50,297	50,297	236,304	236,304	260,870	260,870	25,730	25,730
	2020.4.8 ~2021.4.7	28,179	28,179	296,536	296,536	275,003	275,003	49,712	49,712
	2019.4.8 ~2020.4.7	25,016	25,016	155,184	155,184	152,757	152,757	27,444	27,44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퇴직연금))	2022.4.8 ~2023.4.7	200	200	497	497	697	697	0	0
	2021.4.8 ~2022.4.7	401	401	895	895	1,098	1,098	198	19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퇴직연금))	2020.5.19 ~2021.4.7	300	300	796	796	698	698	397	39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e(퇴직연금))	2022.4.8 ~2023.4.7	48	48	135	135	142	142	41	41
	2021.4.8 ~2022.4.7	21	21	89	89	62	62	47	47
	2020.4.8 ~2021.4.7	6	6	67	67	51	51	21	21
	2019.4.8 ~2020.4.7	0	0	10	10	4	4	6	6
수수료미징구-직판(직판f)	2022.4.8 ~2023.4.7	3,000	3,000	36,176	36,176	35,944	35,944	3,232	3,232
	2021.4.8 ~2022.4.7	3,000	3,000	36,000	36,000	36,000	36,000	3,000	3,000
	2020.4.8 ~2021.4.7	2,000	2,000	39,999	39,999	39,000	39,000	3,000	3,000
	2019.4.8 ~2020.4.7	1,500	1,500	24,000	24,000	23,500	23,500	2,000	2,000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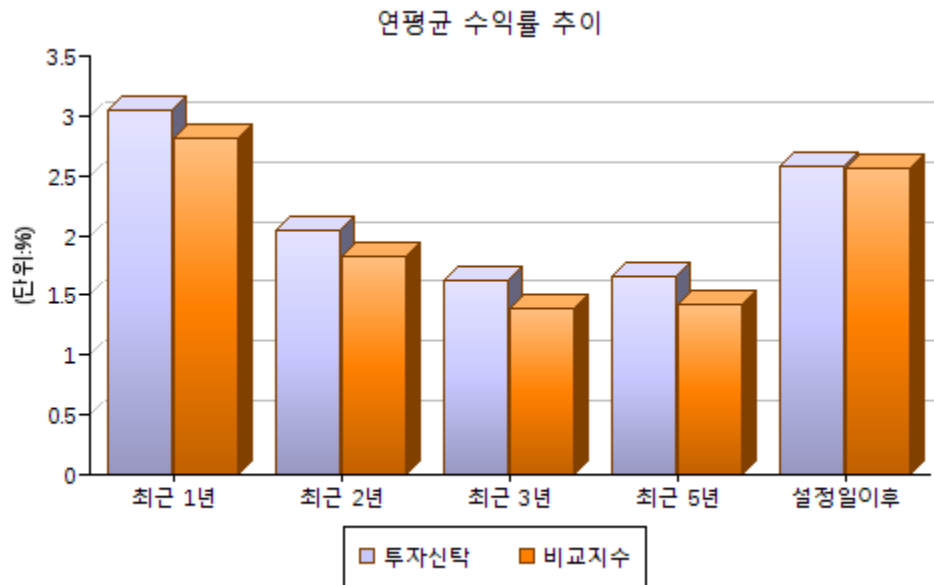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1) 삼성스마트MMF법인 제1호

연도	최근 1년 (22.04.29 ~23.04.28)	최근 2년 (21.04.29 ~23.04.28)	최근 3년 (20.04.29 ~23.04.28)	최근 5년 (18.04.29 ~23.04.28)	설정일 이후 (03.04.08 ~23.04.28)
투자신탁	3.04 %	2.05 %	1.63 %	1.65 %	2.58 %
비교지수	2.81 %	1.83 %	1.39 %	1.43 %	2.56 %
수익률변동성	0.12 %	0.16 %	0.15 %	0.11 %	0.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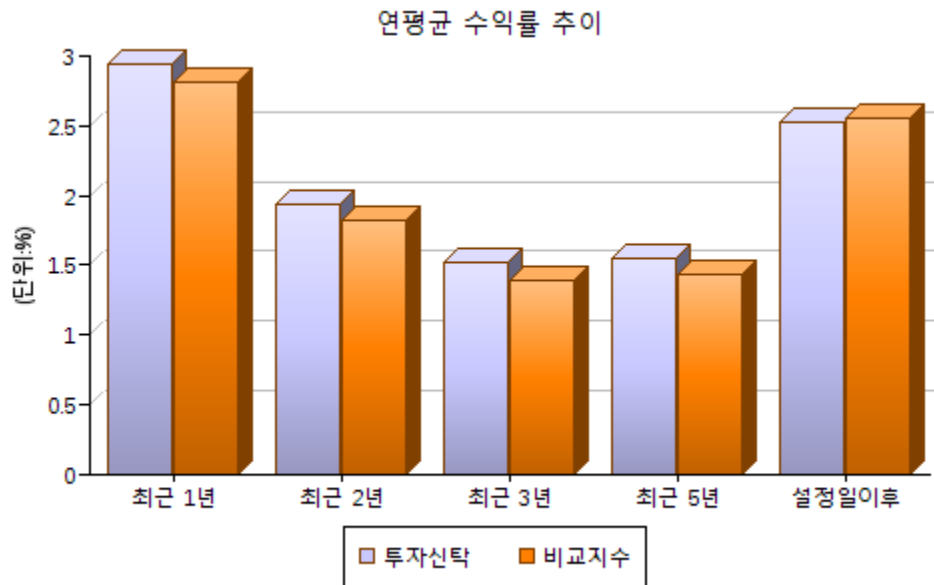
- 비교지수 : 콜금리*10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2) 삼성스마트MMF법인 제1호_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연도	최근 1년 (22.04.29 ~23.04.28)	최근 2년 (21.04.29 ~23.04.28)	최근 3년 (20.04.29 ~23.04.28)	최근 5년 (18.04.29 ~23.04.28)	설정일 이후 (03.04.08 ~23.04.28)
투자신탁	2.94 %	1.94 %	1.52 %	1.55 %	2.53 %
비교지수	2.81 %	1.83 %	1.39 %	1.43 %	2.56 %
수익률변동성	0.12 %	0.16 %	0.15 %	0.11 %	0.15 %

- 비교지수 : 콜금리*10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3) 삼성스마트MMF법인 제1호_Cw(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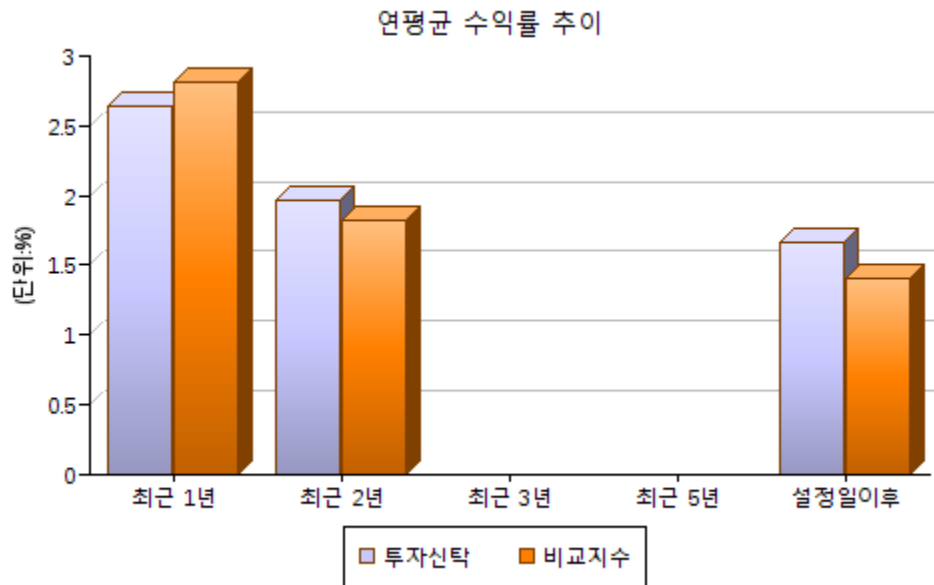
(4) 삼성스마트MMF법인 제1호_Cp(퇴직연금)(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연도	최근 1년 (22.04.29 ~23.04.28)	최근 2년 (21.04.29 ~23.04.28)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05.19 ~23.04.28)
투자신탁	2.64 %	1.96 %			1.66 %
비교지수	2.81 %	1.83 %			1.40 %
수익률변동성	0.12 %	0.16 %			0.15 %

- 비교지수 : 콜금리*10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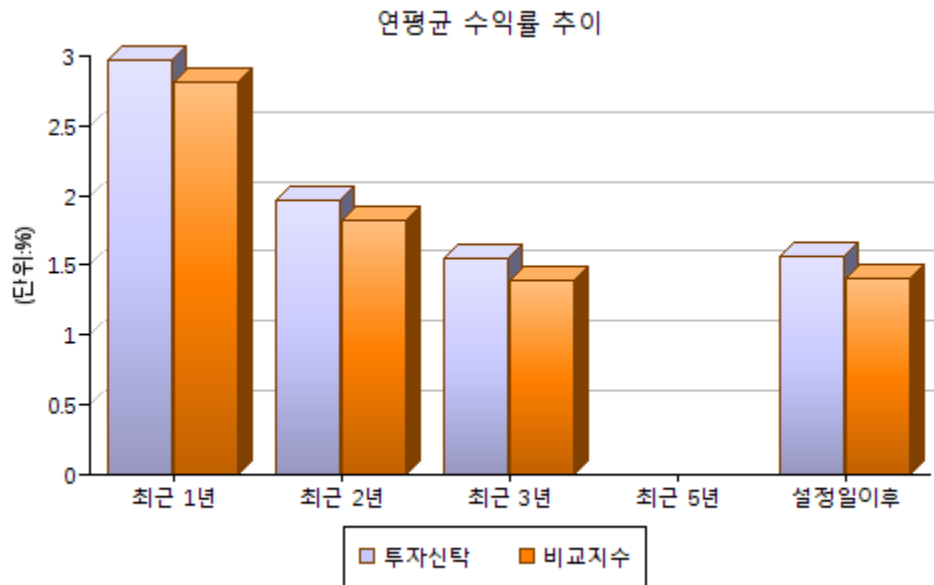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5) 삼성스마트MMF법인 제1호_Cpe(퇴직연금)(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연도	최근 1년 (22.04.29 ~23.04.28)	최근 2년 (21.04.29 ~23.04.28)	최근 3년 (20.04.29 ~23.04.28)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9.02.14 ~23.04.28)
투자신탁	2.97 %	1.97 %	1.55 %		1.56 %
비교지수	2.81 %	1.83 %	1.39 %		1.41 %
수익률변동성	0.12 %	0.16 %	0.15 %		0.15 %

- 비교지수 : 콜금리*10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6) 삼성스마트MMF법인 제1호_0(디폴트옵션)(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디폴트옵션, 퇴직연금)

- 해당사항 없음

(7) 삼성스마트MMF법인 제1호_직판f(수수료미징구-직판)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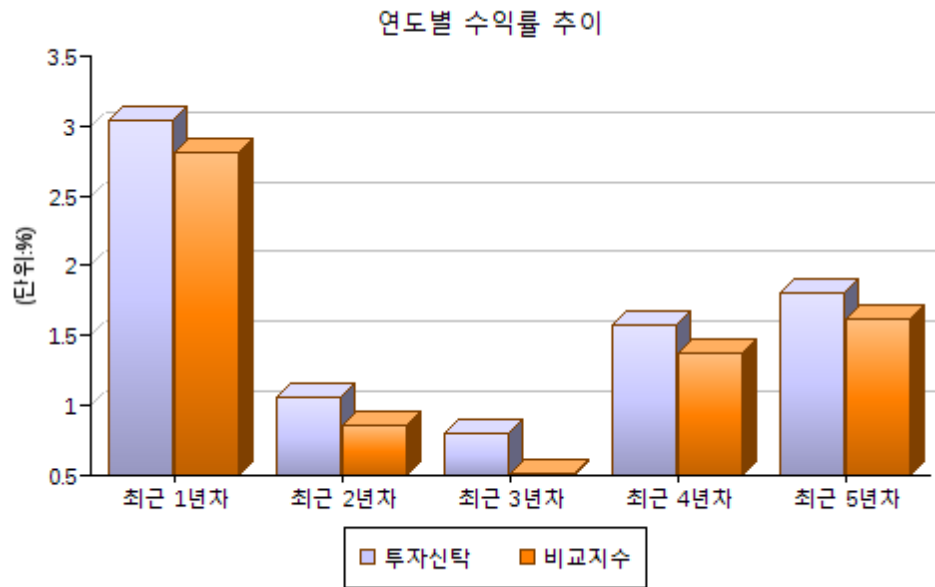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1) 삼성스마트MMF법인 제1호

연도	최근 1년차 (22.04.29 ~23.04.28)	최근 2년차 (21.04.29 ~22.04.28)	최근 3년차 (20.04.29 ~21.04.28)	최근 4년차 (19.04.29 ~20.04.28)	최근 5년차 (18.04.29 ~19.04.28)
투자신탁	3.04 %	1.06 %	0.80 %	1.58 %	1.80 %
비교지수	2.81 %	0.86 %	0.52 %	1.37 %	1.62 %

- 비교지수 : 콜금리*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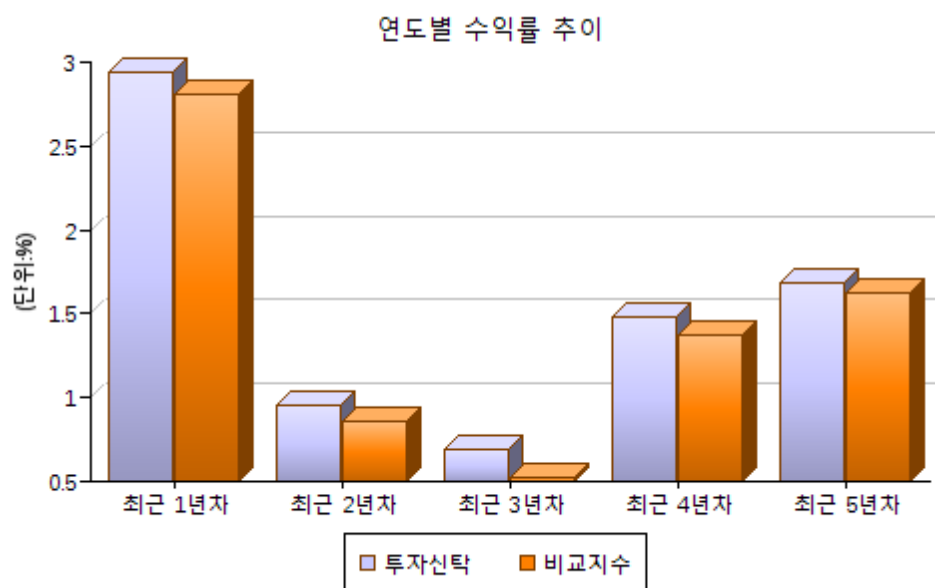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삼성스마트MMF법인 제1호_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연도	최근 1년차 (22.04.29 ~23.04.28)	최근 2년차 (21.04.29 ~22.04.28)	최근 3년차 (20.04.29 ~21.04.28)	최근 4년차 (19.04.29 ~20.04.28)	최근 5년차 (18.04.29 ~19.04.28)
투자신탁	2.94 %	0.95 %	0.69 %	1.48 %	1.69 %
비교지수	2.81 %	0.86 %	0.52 %	1.37 %	1.62 %

- 비교지수 : 콜금리*10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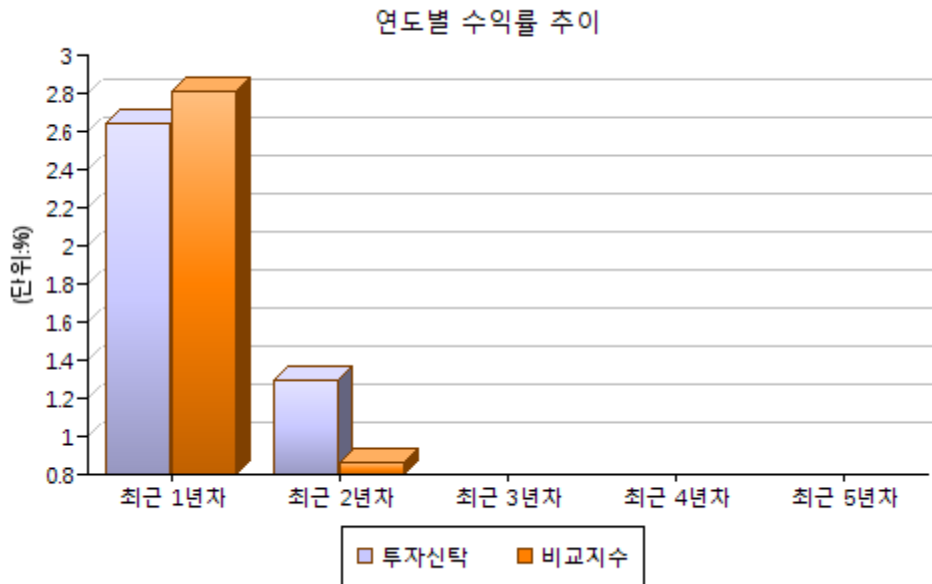
(3) 삼성스마트MMF법인 제1호_Cw(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 해당사항 없음

(4) 삼성스마트MMF법인 제1호_Cp(퇴직연금)(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연도	최근 1년차 (22.04.29 ~23.04.28)	최근 2년차 (21.04.29 ~22.04.28)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투자신탁	2.64 %	1.29 %			
비교지수	2.81 %	0.8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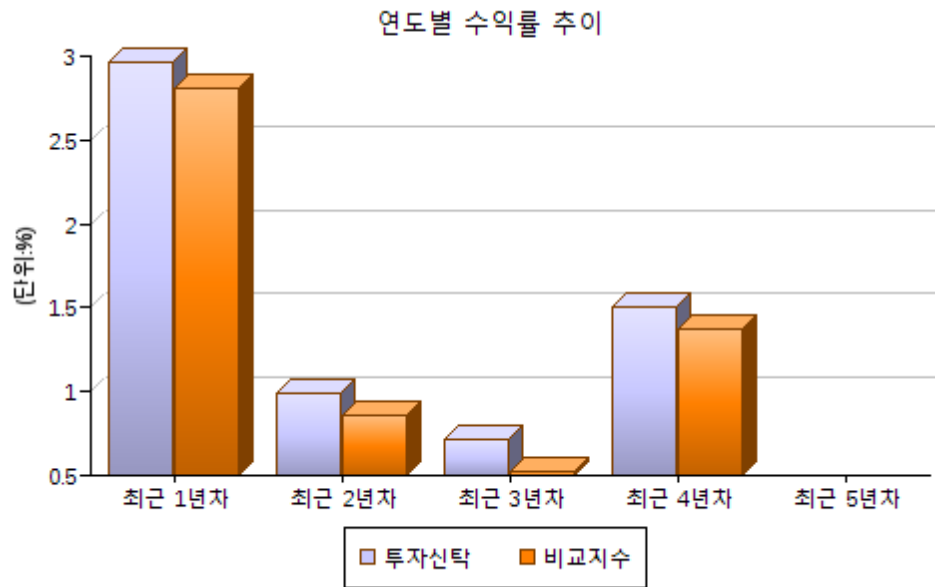
- 비교지수 : 콜금리*10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5) 삼성스마트MMF법인 제1호_Cpe(퇴직연금)(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연도	최근 1년차 (22.04.29 ~23.04.28)	최근 2년차 (21.04.29 ~22.04.28)	최근 3년차 (20.04.29 ~21.04.28)	최근 4년차 (19.04.29 ~20.04.28)	최근 5년차
투자신탁	2.97 %	0.99 %	0.72 %	1.51 %	
비교지수	2.81 %	0.86 %	0.52 %	1.37 %	

- 비교지수 : 콜금리*10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6) 삼성스마트MMF법인 제1호_0(디폴트옵션)(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디폴트옵션, 퇴직연금)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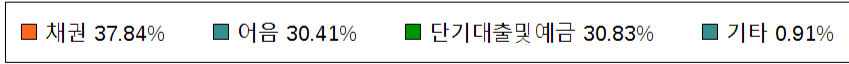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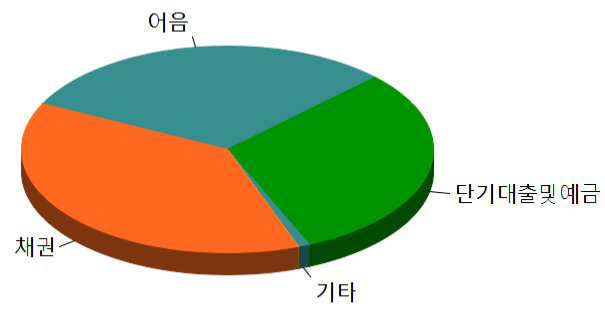
(7) 삼성스마트MMF법인 제1호_직판f(수수료미징구-직판)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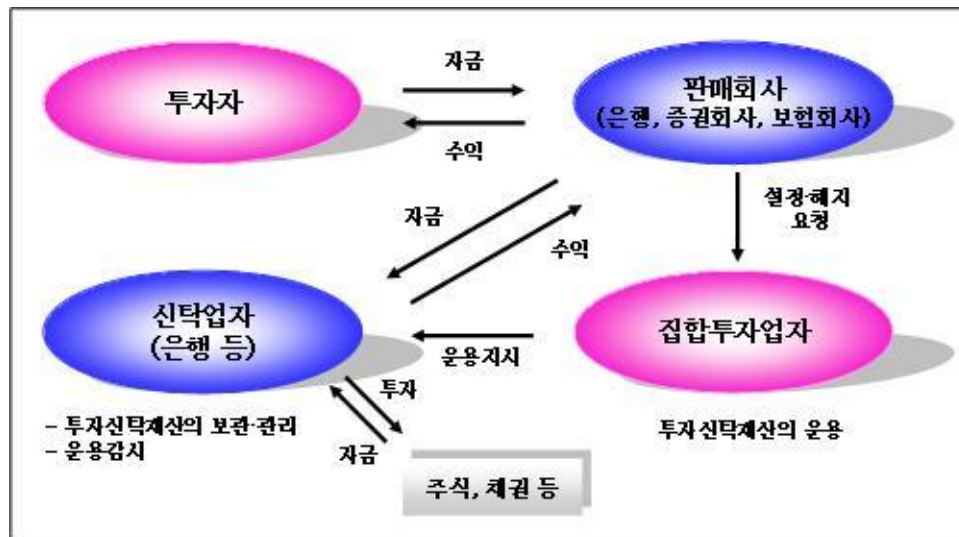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2.12.31 기준, 억원)

통화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파생 결합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0	12,314	9,897	0	0	0	0	0	0	0	10,033	297	32,541
합계	0	12,314	9,897	0	0	0	0	0	0	0	10,033	297	32,541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자산운용(16~18층) (연락처 : 02-3774-7600, http://www.samsungfund.com)
회사 연혁	1998.09.15 설립등기 1999.12.29 구.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흡수합병 2000.03.03 자본금 300억 유상증자 2000.03.30 회사상호 변경(삼성생명투자신탁운용(주) → 삼성투자신탁운용(주)) 2001.11.05 연기금 투자폴 주간운용사 선정 2002.10.14 국내 최초 상장지수펀드(ETF) KODEX200 상장 2007.11.01 해외법인 Samsung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Ltd. 설립 2010.02.22 국내 최초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KODEX레버리지 상장 2010.04.01 회사상호변경 (삼성투자신탁운용(주) → 삼성자산운용(주)) 2011.08.26 사옥 이전(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중구 태평로) 2011.12.16 한국형 헤지펀드 삼성H클럽 Equity Hedge 1호 출시 2014.07.21 최대주주 변경 : 삼성증권 → 삼성생명 2015.02.01 삼성생명 뉴욕현지법인 인수 Samsung Asset Management(New York) 2015.03.31 노동부 산재보험기금 전담운용기관(OCIO) 선정 2015.11.30 삼성생명 런던현지법인 인수 Samsung Asset Management(London) 2015.12.01 관리자산 200兆 달성

회사 연혁	2016.04.21	한국형 Target Date Fund 출시 (美 Capital社 제휴)
	2016.04.29	홍콩 증시 최초 원유선물 ETF 상장
	2016.08.11	중국 북경 자문사 설립(Samsung Asset Management (Beijing) Limited)
	2016.08.29	사옥 이전 (서울시 중구 → 서초구 서초대로 삼성전자 서초사옥)
	2017.01.02	물적분할을 통한 삼성액티브자산운용(주) 삼성헤지자산운용(주) 설립
	2017.05.30	한국형 Retirement Income Fund 출시 (美 Capital社 제휴)
	2017.07.31	업계 최초 FA, FB 전용 판매지원플랫폼 오픈
	2017.09.08	연기금 투자폴 주간운용사 재선정
	2019.03.27	산재보험기금 전담운용기관(OCIO) 재선정
	2019.12.02	B2C 직판 시스템 'r2' 서비스 오픈
	2021.12.14	연기금 투자폴 주간운용사 재선정
자본금	934.3억	
주요주주현황	삼성생명보험(주)(100%)	
사업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업(모든 종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무, 투자일임업무,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부동산임대업무, 신탁업, 부동산개발업무, 투자중개·매매업(집합투자증권의 중개·매매에 한함), 집합투자기구 또는 증권과 관련된 자료의 출판 및 판매에 관한 업무, 집합투자기구 또는 증권과 관련된 재산권, 상표권 등 권리 행사에 관한 업무, 집합투자기구 또는 증권과 관련된 전산용역 제공 또는 소프트웨어 대여·판매 업무, 자본시장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사업, 인사, 재무, 마케팅, 위험관리, 내부통제, 일반사무관리 등의 용역 제공, 기타 위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위 사업 외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주) 산정 기준일은 2023.1.1일 입니다.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 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25(당)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24(전)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당기말		전기말	
자 산				
I. 현금및현금성자산	133,092,874,366		78,739,003,408	
II.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121,603,010,487		608,397,341,535	
III.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4,977,343,969		5,192,687,938	
IV. 상각후원가금융자산	224,246,573,149		179,240,782,900	
V. 관계기업투자주식	38,055,847,761		-	
VI. 유형자산	2,972,958,567		2,278,861,792	
VII. 사용권자산	12,191,723,552		6,004,967,156	
VIII. 무형자산	35,449,074,552		35,907,802,947	
IX. 순확정급여자산	2,705,827,778		1,767,900,082	
X. 이연법인세자산	2,631,762,804		839,608,252	
XI. 기타자산	2,670,026,197		2,699,312,333	
자 산 총 계		1,580,597,023,182		921,068,268,343
부 채				
I.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	14,271,971		49,151,473	
II. 예수부채	7,201,895,088		571,707,070	
III. 차입부채	137,100,000,000		84,900,000,000	
IV. 기타금융부채	665,928,463,404		142,842,367,649	
V. 총당부채	583,057,312		535,608,071	
VI. 당기법인세부채	19,885,747,681		21,505,417,462	
VII. 기타부채	3,634,983,017		5,173,003,357	
부 채 총 계		834,348,418,473		255,577,255,082
자 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746,248,604,709		665,491,013,261
I. 자본금	93,430,000,000		93,430,000,000	
II. 자본잉여금	(384,524,208)		(384,524,208)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171,835,232)		(7,555,955,386)	
IV. 이익잉여금	658,374,964,149		580,001,492,855	
비지배지분		-		-
자 본 총 계		746,248,604,709		665,491,013,26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580,597,023,182		921,068,268,343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5(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4(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당기		전기	
I. 영업수익		301,688,519,191		285,100,646,853
1. 수수료수익	266,646,174,203		263,517,264,100	
2.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이익	18,720,010,074		7,625,917,281	
3. 이자수익	13,739,618,214		7,208,163,630	
4. 외환거래이익	995,162,909		1,664,050,317	
5. 배당금수익	1,434,953,578		5,043,707,645	
6. 기타수익	152,600,213		41,543,880	
II. 영업비용		192,355,446,520		163,771,413,698
1. 수수료비용	10,492,020,885		11,466,044,002	
2.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손실	17,560,534,264		5,861,026,450	
3. 이자비용	9,915,615,806		2,399,762,511	
4. 외환거래손실	1,160,182,804		704,401,436	
5. 판매비	11,558,038,299		11,607,991,640	
6. 일반관리비	141,662,211,954		131,718,689,687	
7. 기타비용	6,842,508		23,497,972	
III. 영업이익		109,333,072,671		121,329,233,155
IV. 영업외손익		(110,415,049)		(76,870,332)
1. 영업외수익	200,176,674		208,452,188	
2. 영업외비용	310,591,723		285,322,520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9,222,657,622		121,252,362,823
VI. 법인세비용		30,849,186,328		33,317,614,861
VII. 당기순이익		78,373,471,294		87,934,747,962
VIII. 기타포괄손익		2,384,120,154		6,067,446,396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512,517,901)		(1,067,539,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286,689,630		(295,364,880)	
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2,290,509,325)		(1,111,372,93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491,301,794		339,198,811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3,896,638,055		7,134,985,39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171,355,654)		(113,232,337)	
해외사업환산손익	4,012,508,748		7,211,553,10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55,484,961		36,664,631	
IX. 당기총포괄이익		80,757,591,448		94,002,194,358
X. 당기순이익의 귀속		78,373,471,294		87,934,747,962
1. 지배기업의 소유주	78,373,471,294		87,934,747,962	
XI.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80,757,591,448		94,002,194,358
1. 지배기업의 소유주	80,757,591,448		94,002,194,358	
XII. 지배기업 주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4,194		4,706

라. 운용자산규모

(2023. 4.28 현재/억좌)

구분	증권					MMF	특별자산	부동산	혼합자산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 상품	재간접					
수탁고	192,858	9,347	137,636	159,512	509,121	156,544	77,699	1,307	11,824	1,255,848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 개요

회사명	한국증권금융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전화번호 : 02)3770-8800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sfc.co.kr

(2) 주요 업무

-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4)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5)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6)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7)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8)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1) 의무

-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그 밖에 법제247조제5항에서 열거하는 사항

2)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KAP)	나이스피앤아이(주)	KIS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운니동, 삼환빌딩) 4층 TEL: 02-2251-130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여의도동, 대하빌딩 4층) TEL: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한국화재보 험협회빌딩) 4층 TEL: 02-3215-14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길 29 (인사동, 태화빌딩) 4층 TEL: 02-721-5300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2) 주요 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2)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3)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 방법

- ①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익자총회 결의 사항은 없습니다.

-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그러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직전 180일(이하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신탁업자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집합투자업자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법률자문료 등)의 합(이하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9) 그 밖에 수익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 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됩니다.
-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집합투자재산 운용 내역서
 -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 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35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신탁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수익자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투자신탁의 등록 취소/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일반사모펀드에 한함)법 제 249조의 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명령을 받은 경우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②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③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2)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② 직전의 기준일로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④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투자운용인력의 변경/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 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의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 ⑦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amsungfund.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 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채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11)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①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②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이 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4) 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증권의 거래	- 평가 항목 중개거래 시장점유율, 거래관련 자격보유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 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의무투자

- 해당사항 없음

나. 투자목적의 투자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내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 투자자에게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보수 또는 총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판매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판매 및 관리 등 집합투자증권 매입, 환매 및 투자기간 중 지속적으로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성과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됩니다. 만약 이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상 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용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수수료	판매회사가 판매 또는 환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받거나 투자기간 동안 분할하여 투자자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지급 받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 등의 명칭으로 구분합니다.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내용
설정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관련 법령 등에서는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